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5126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제정석, 최한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21. 1. 18. 접수 제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1.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인은 2021. 1. 12. D병원에 폐암으로 입원하였다가 2021. 2. 23. E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2021. 3. 25.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그 슬하에 F와 G을 두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2021. 1. 18.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의 어머니이자 망인의 여동생인 H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 중의 1인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2021. 1. 18.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 또는 H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2021. 1. 18.자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월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22층 공동주택(아파트),
 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
 지2층 1197.074㎡
 지1층 1393.9738㎡
 1층 736.2517㎡
 2층 580.2118㎡
 3층 내지 22층 각 845.868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월근콘크리트구조 23.574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부산광역시 금정구
 1834㎡
 2. 부산광역시 금정구
 61㎡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895분의 3.7003. 끝.

